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 영 숙**

이 종 원

황 진 구

I. 서 론

- II.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 III.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프로그램
- IV.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특징
- 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청소년기가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이유는 이 기간이 인생에서 단순히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함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직업과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필요한 준비기로서 청소년기가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지닌 과업, 특징, 문제 등의 양상이 과거와 다르게 되고 그 시기가 지닌 갈등과 고민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 국가내의 공공분야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도·육성·보호라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하여야 하며, 청소년 삶의 총체적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복지사업 및 사후지도 차원의 복지사업실시 및 프로그램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복지” 및 “정책”과 관련된 제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틀을 제공하며,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3년도 연구사업인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이영숙(연구위원), 이종원(선임연구원), 황진구(연구원) 임.

각 분야별로 대상자의 욕구와 실태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제2장에서는 청소년 복지정책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특징과 이념,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청소년 복지정책의 실제적 운용과 그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적 관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위한 각국의 장·단점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비교라는 방법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국가간 청소년 복지정책 비교연구가 각 국가의 주요 정책 내용 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정책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복지정책이 자유주의적 전통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국가주의적 전통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제도상 미국식 자유주의적 전통을 추구하고 있으나 문화적·역사적 배경상 일본과 일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두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화적 특성에 알맞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청소년 복지정책”이라는 용어의 생소함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분야의 개념적, 학문적 토대는 매

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특징과 “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의 주요 내용을 검토할 경우,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가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원조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제 측면

청소년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수준의 분석틀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둘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셋째, 서비스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전달되는가 넷째, 재원의 확보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이다. 이러한 네 가지 수준의 준거에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것은 정책 입안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의 가치 판단을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설정은 청소년의 가장 절실한 욕구와 필요에서 출발하며 청소년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적 토대의 제약을 받는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은 과거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추세에서 오늘날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전체 일반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도 다양화,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의 대상범위는 정책의 목표에 보다 근접하는 욕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고, 보다 협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과 서

비스의 내용과 질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형태와 수혜대상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줌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형태와, 환경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청소년복지의 전달체계는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분야의 공·사기관, 단체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청소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연대에 의한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과 그 법적인 보장,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인력의 개입을 포함한다.

청소년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청소년복지의 재원은 청소년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활동에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의 재원은 그 구성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대개 세금징수원이 있는 정부단위에 의해서 조달되는 재원을 말하고, 민간부문의 재원은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이나 보험금, 민간으로부터의 후원금과 기부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II.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1.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이 지닌 이념과 목표는 청소년 자신, 부모와 가족, 사회 등 삼자간의 권리와 책임의 확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청소년 자신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는 상관없이 독자적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과 양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아직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권리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성인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 아울러 부모와 가족 및 사회도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권리와 책임을 지게 되는 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부모, 자녀에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과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빈곤 및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사회보장법 Title IV-A에 의한 부양아동을 가진 가족을 위한 보조(AFDC)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소득유지 *income maintenance*사업, 1977년 식품구매권 *Food Stamps*법의 제정에 의해 저소득가정과 청소년 개인에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구매권 정책 등의 식품영양사업이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각종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사업 중 가장 큰 항목은 주 정부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지원금 *Social Service Block Grant*」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사업,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의 개선을 위한 1988년의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 등이 있다.

1)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조흥식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내용을 요약한 것임.

둘째, 심신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은 1975년에 제정된 「전체 장애아동 교육법 *The Education of All Handicapped Children Act*」(PL94-142)에 의하여 3-18세의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주정부가 맡게 되었고, 가능하면 장애아동을 일반교실에 통합시키는 등 다양한 교육방법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셋째,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 이동생활을 하는 가출청소년, 마약복용 가출청소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학대, 유기 및 미혼모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사업, 아동학대 도전자지원금, 아동학대에 대한 복합훈련 프로그램,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사업,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가정대체 서비스로서의 가정위탁사업, 독립생활사업, 입양사업에 대한 지원(사회보장법 IV-E에 의거)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일반청소년을 위한 미국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종합적인 예방과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종합청소년개발센터, 청소년보호사업, 아동복지사업,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 피난민, 이민가족 청소년사업, 미국원주민 청소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기별,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미국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 재가복지 서비스 *home-based care*등의 가족 중심의 정책이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한 법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법 Title IV(1935)은 미국에서 가난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2) 지역사회 활성화법 *The Community Facility Act ; Lannem Act* (1942)은 전국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최초의 법으로, 이 법을 통하여 비로소 1일보호센터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가 시작되었다. (3) 사회보장법의 수정법(1962)은 1935년의 요보호아동부조(ADC)를 AFDC로 명칭을 바꾸고, 가족을 프로그램 대상의 기본단위로 하였다. (4) 경제기회법 *Economic Opportunity Act* (1964)을 통하여 빈곤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5) 식품구매권법 *Food Stamps Act* (1964)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식품구입비 보조(Food Assistance)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6) 사회보장법 Title IV-A (1967)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것으로, AFDC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정의 아동수를 제한하고 노동유인 *Work Incentive : WIN*프로그램을 제정하여, AFDC를 받으려면 고용사무소에 등록하여 적절한 일자리가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7) 아동학대 예방과 처우에 관한 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 PL 93-247* (1974)을 통하여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를 예방,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시작되었고, 이 해에 국립아동학대 및 유기방지센터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가 설립되었다. (8) 청소년비행예방법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 PL 93-415* (1974)은 불필요한 청소년의 구금을 줄이고,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우를 위해 주정부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 연방정부의 보조가 주어지도록 하는 법이다.

(9) 장애아동교육법 *The Education of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 PL 94-142* (1975)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각종 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가능한 한 장애아동들을 정상아동의 학급에 넣어 사회적 통합화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10) 입양부조아 아동복지법 (PL 96-272) (1980)은 가장 청소년 복지정책에 영향을 끼친 법 가운데 하나로써 기존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수정하여 효과적인 실천방법의 적용과 지침을 마련하였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를 따를 때에 한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행정체계는 정부차원에서 미국 청소년 복지정책만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는 없고, 다만 「보건 및 인간서비스성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 여러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청소년정책도 함께 다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보건 및 인간서비스성 (DHHS)은 ① 사회보장국 ② 보건재정국 ③ 공중보건서비스국 ④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소년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네번째인 ACF이다. 이는 AFDC, WIN 및 아동 지원강화를 포함하여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의 경우 공공복지청인 있는데, 가족·아동서비스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사회복지과가 있으며, 그 산하에 아동·가족 서비스사무소가 설치되어 요보호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부문 복지기관에는 크게 나누어 비영리적 자발기관 *non-profit voluntary agencies*과 영리적 기관 *proprietary agencies*이 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비영리기관들은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로 이사회

를 구성하고 있으며, 1960년 이후 많이 생긴 영리기관들은 이사회를 주주 혹은 가족들로 구성하였다. 영리기관들이 맡은 서비스들은 1일보호, homemaker, 위탁보호사업 등 분야로 점차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크게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인력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적 서비스는 문제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수정을 위한 아동진료소 *Child guidance clinics* 프로그램과, 아동학대와 유기등을 예방,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행동치료사 등 각 전문직이 팀워크를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둘째, 보충적 서비스에는 부모가 질병 혹은 다른 이유로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운영되는 homemaker와 유아교사, 사회사업가가 주로 업무를 맡고 있다. 셋째, 대리적 서비스에는 위탁보호, 입양, 수용시설보호 등이 있는데, 이 분야에는 전문 사회사업가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

4)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

청소년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재원조달은 일반예산에서 충당되는데, 연방정부의 경우는 재원을 의회가 결정한 세율에 따른 개인소득세에서, 주정부의 경우는 주정부 소득세 및 판매세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재산세와 교육세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은 종전에는 주로 독지가나 종교단체의 기부금에 의존하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주재원이 정부가 되고 있다. 여기서 정부로부터의 주재원이란 정부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을

통한 수입을 말하는데, 이외에도 영리기관에서는 제삼자지불체계의 방식에 의한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정부투자, 민간기관운영’체계 속에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복지의 민간부문에 대한 활성화, 즉 민영화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주된 추세이지만 공적 부조나 사회보험 등에 의한 정부지출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관련된 부문은 여전히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겠다.

2.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일본에서 청소년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복지사업은 첫째, 가정교육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가정교육에 관한 각종 지도자료의 작성·배포, 가정교육사무담당자회의 등의 개최, 가정교육에 관한 TV방송의 실시위탁 등의 시행과 공공단체가 개설·실시하는 가정교육학급, 가정교육지역교류사업, 건전가정교육상담사업, 가정교육종합추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가정아동건전육성사업을 위해 후생성에서는 아동건전육성 행정의 일환으로서 아동상담소, 가정아동상담실을 개설하여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상담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대책으로는 양호아동의 복지대책, 보육아동에 대한 복지대책, 정서장애아동의 복지대책, 모자가정

에 대한 복지대책 등이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청소년 복지사업은 교육기회의 증대와 함께 유아교육, 고등교육 등 의무교육 전후에 걸쳐 학교생활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중요한 장으로 되고 있다. 유아교육은 의무교육 취학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유치원에서 실시되는데, 유치는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부여하여 심신의 발달을 조장하는 목적으로 만 3세에서 소학교 취학하기까지의 유아를 입원시킨다. 의무교육은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취학이 해당된다. 고등학교교육은 의무교육 수료후의 교육기관이지만 1992년도 중학교졸업자의 약 95% 이상이 진학하여 거의 의무교육적인 실태가 되었다.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이다. 특수교육은 심신장애아를 위한 교육이다. 교육형태는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를 설치하여 교육하는 방법과 일반소학교,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근로청소년 복지정책은 근로청소년복지법(1970년)에 기초하여 노동대신이 5년마다 책정한 근로청소년복지대기기본방침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가 결정한 도도부현(都道府縣)근로청소년복지사업계획에 의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로청소년을 건전육성하기 위해 근로청소년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7월의 세번째 토요일을 「근로청소년의 날」로 정하여 각종 행사가 거행된다. 근로청소년홈은 근로청소년복지법 제15조 규정에 기초하여 근로청소년복지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며, 노동성에서는 근로청소년홈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2)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제직중인 송정부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내용을 요약한 것임.

다음세대 농업과 농가생활의 담당자가 될 농업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교육, 집단활동 촉진, 농업후계자육성자금대부 등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임야청에서는 1990년 임업후계자 육성사업, 임업후계자양성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어업후계자의 육성, 확보를 위해 수산성에서는 종래의 후계자대책사업을 확대강화한 사업으로서 1990년도 부터 도부현이 젊은 어업자육성 확보촉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대책을 위해서 관계업자의 자주규제 촉진방법으로 신문, 방송, 출판, 영화, 광고, 레코드, 비디오 등의 각 업자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간담회전국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총무청이 주창하여 1979년도 부터 매년 7월에 실시하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의 달을 주민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문제심의회에서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인 청소년문제심의회는 1966년 4월 발족했다. 총무청에서는 관계성청의 협력을 얻어 1979년부터 매년 7월을 「청소년을 비행으로 부터 보호하는 전국강조월간」으로 정하여 비행방지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일본 청소년 복지정책과 관련된 각 법령에서는 연령에 따라 소년, 미성년자, 아동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중에서 소년 내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률은 소년법과 근로청소년복지법이고 복지라는 용어는 아동복지법과 근로청소년복지법에 있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동복지법에 준거하고 기타 근로청

소년복지법과 청소년관련법이 청소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의 청소년관련부처 중 행정내용에 따라 총무청, 경찰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최고재판소가 분담하고 있다. 청소년의 대책에 대한 종합적 조정업무는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는데, 이 기관은 총무청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별기관(조직)이며 본부장은 총무청장관이다. 청소년대책본부의 임무는 ①청소년지도, 육성, 보호, 교정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 수립 ②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교정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및 업무의 종합 조정 ③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교정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른 행정부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기획, 입안 및 실시 등이다.

지방정부의 청소년 관련조직도 중앙정부와 같이 청소년전담기구에는 없으나 지방행정단위에서 청소년복지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행정단위는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으로 구분된다.

III.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프로그램

1 미국의 최근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다음은 최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가. 청소년 직업훈련관련 프로그램

미국의 고교중퇴 및 고교졸업 학력의 청소년은 장래성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종의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적 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청소년의 취업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직업훈련사업은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한 일부분으로서 청소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강력한 치유제가 되고 있다.

직업훈련사업 중 협력교육 *Cooperative Education*은 학교의 교실수업과 임금을 받거나 받지 않는 현장실습을 번갈아 가진다. 이 교육의 장점은 최신의 설비와 작업과정을 갖추고 최신의 기술을 습득한 기사가 지도하는 현장에서 실습한다는 것과, 교실과는 달리 현장에 적절한 근무복, 태도, 시간엄수, 신뢰성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직업실습프로그램 *Career Intern Program*은 1977년의 *Youth Employment and Demonstration Practice Act*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제도교육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교육으로서, 빈곤으로 인해 중퇴하거나 중퇴의 잠재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직업에 대한 지식을 주고, 기초기술을 향상시킬 의도로 실시되었다.

여름방학중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Summer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 STEP*은 학교성적이 열등한 14-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기초적 학업내용에 대한 지도, 10대부모가 되지 않도록 삶의 목표와 취업동기를 부여받아 기본적인 삶의 기술 *life skills*을 습득한다. 미국졸업생을 위한 직업훈련 *Jobs for America's Graduates : JAG*도 JTPA가 주관하고, JTPA와 민간영역이 기부금으로 재정지원하는 취업전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은 안했던 학생에 비해 60%가 더 많이 전업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단 *Job Corps*은 공적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을 위해 지지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형성되었다. 직업단은 중퇴한 취약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과 직접 실습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 건축프로그램 *Youth Build Program*은 1991년에 제정된 *Youth Build Act*에 의해 연방정부가 재정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사업, 지도자훈련, 취업알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실시 취지는 16~24세 사이 빈곤가정 출신의 학교중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작업을 통해 고등학교졸업장을 취득하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66%나 급증되었으며, 1991년에는 한 해동안 270만명의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방임된 것으로 아동보호서비스기관에 신고되었다. 실시되고 있는 주요 아동학대방지 서비스는 아동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학대가족은 치료의 대상이 되며, 예방 및 문제의 개입 시기에 따라 그 내용과 대상이 다르므로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1단계는 아동학대 관련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성적 학대방지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간주되는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3단계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나 방임이 이미 발생한 가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발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핵심적 요소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는 첫째, 아동의 긍정적 행위에 주목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보상하도록 부모들을 교육한다는 것 둘째,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언어나 체벌 대신 대안을 사용하도록 부모들을 교육하는 것 셋째, 아동학대 상황에서 부모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강화시키는 훈련프로그램의 실시등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방지 서비스의 초점은 예방과 발생요인의 확인 및 제거, 부모교육 그리고 치료를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3) 10대 미혼모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 청소년의 혼전 성경험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미국은 10대 임신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에서 매년 50만명의 아이가 10대 임신부에 의해 출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반이상은 10대 미혼모에 의해 출산되었다.

대부분의 미혼모사업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직업배치, 산전·산후·유아에 대한 의료보호, 피임상담 및 서비스, 아동발달·부모교육 및 소비자교육, 재정지원 및 가계예산 상담, 여가시간 활동, 탁아상담 및 서비스, 주택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분야의 종합적인 서비스는 교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팀에 의해 제공된다.

연방정부 지원의 특징은 지역사회 중심이며, 시설보호기관에 미혼모를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통원형 종합보호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과거에는 교육관계 당국의 방침에 의해 10대

임신부는 임신기간 중 정확하고, 출산 후 복학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모의 가정이 임신부들을 위한 시설수용 보호기관인 ‘임신부의 집’ 같은 곳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신부들이 일반학교에 계속 다니거나, 임신부를 위한 특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전학해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강화된 10대 임신문제에 대한 전문사회사업은 임신 예방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10대 어머니에 대한 사업과 아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사업도 제공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다.

미혼모 관련 프로그램인 방향수정 프로그램 *Project Redirection*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지 못한 17세 이하의 10대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몇몇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 대부분은 피부양아동가정부조(AFDC)를 받고 있다.

10대 임신 예방사업은 성교육이 최우선이다. 미국의 청소년 성교육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청소년들의 집단토론의 형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형식에서 구체적으로 성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10대 청소년 자신이 토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교육 형태라고 한다.

4) 청소년 교정교화 프로그램

미국의 소년법원은 12~18세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교정교화사업을 실시한다. 미국의 공적 부문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이 거의 사춘기 이전의 아동들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교정교화사업은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970년대에 가서 미국의 소년사법기관은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정책들을 모색하였다. 1974년에는 Juvenile Justice and Delin-

quency Prevention(JJDP)법이 만들어져 비행청소년의 비행등급에 따라 사회안에서 처우를 받도록 독려하고, 청소년교정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재정을 지원하였다.

청소년 교정교화사업의 관건은 비행청소년이 소년사법기관을 거쳐가는 동안 과연 교정교화되고 있는가라는 점과, 그러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산이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Broward의 경범청소년을 위한 “가정구금 Home Detention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송 중재, 가정구금 프로그램 참여팀에 대한 훈련, 주간보고센터, 대안적 주거지 제공, 객관적 감별 장치의 개발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군청의 해당 사업부에 의해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소년클럽과 루터교회 성직자단의 협력,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지역학교의 특수교육교사의 파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Utah주의 “소규모 엄중경비 교정교화프로그램”은 강력범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 근처에서 복역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교정교화과정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규모면에서 이것은 대규모시설과 달리 남녀혼성 30~40명의 소규모 수용기관으로서, 1조에 10~12명씩 나누어 각각 분리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일본의 최근 청소년복지의 동향

1) 정서장애아 문제와 복지

정서장애아의 치료기관인 일본의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은 정신의학 또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특히 아동정신의학 또는 아동심리학 과정의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소장 아래 아동정신과 및 심리요법의 기술을 습득한 치료사 외에 지도원과 보모를 배치하여 통원(通園) 혹은 수용에 의한 정서장애아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임소아동의 교육은 시설 주변에 있는 학교의 분교 등이 설치되어 행해진다. 이것은 교육행정상의 정서장애아 특수학급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런 종류의 특수학급은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외에 국민학교, 병원 등에도 설치되어 있다. 특히 근년에 접어들어 일본의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만성화된 아동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정서장애아 치료시설은 시설 전체, 일상생활의 모든 부문이 치료적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아동들은 수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그곳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장애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장, 즉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아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별개의 장면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수용은 통제된 환경을 필요로 하는 매우 손상된 아동이나 극히 열악한 가정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일부의 아동들에게는 적합한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아동에게는 통원치료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동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가정에 머물면서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수용의 경우보다도 부모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2) 장애인 복지과 교육

일본에서 장애아동의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문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장애아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를 지닌 아동으로서 정의되고 있는데, 장애의 종류와 정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아동 대책은 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이 있는데, 최근 의학의 발전에 따라 심신장애의 발생 원인의 일부에 대한 예방이 가능해지면서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장애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장애의 원인중 상당부분이 임신중, 분만주변기 및 유아기의 이상에서 비롯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모자보건에 관한 지식을 홍보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임신부, 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보건지도 및 방문지도가 행해지는 등 모자에 관한 종합적인 보건대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대책은 그동안 주로 시설입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근년에는 재가복지대책, 즉 장애아동이 가정에서 머물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치료받게 하는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이다. 재가복지의 주된 내용 중 장애아동 치료를 위한 상담의 창구로서는 아동상담소, 보건소, 복지사무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동상담소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부모의 모임(親の會)등 민간단체의 상담활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로부터 신체장애자 수첩을 교부받은 장애아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의족, 휠체어 등 각종 보장구의 교부 및 수리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육성환경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장애아의 지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증의 심

신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의 파견이 행해지고 있다. 그밖에 장애아 시설의 설비를 재가장애아에게 개방함으로써 모든 장애아들이 시설의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특별 아동부양수당 가정에서 장애의 상태가 심한 아동을 양육하데 따른 많은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간수준 정도의 장애를 지닌 아동의 가정에 대해서 매월 일정 금액(1990년 현재 1급 44,900엔, 2급 29,930엔)의 특별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은 제도 발족 초창기에는 1만여 가정 남짓했으나 현재에는 10만 이상의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시설보호로는 지체부자유아 시설이 있는데, 지체부자유아란 팔, 다리 등 신체 일부에 기능장애가 있는 아동을 말한다. 이중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동을 이 시설에 입소시켜 치료를 행함과 아울러 독립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맹아 또는 농아로서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지도가 곤란한 아동은 각각 맹아시설, 농아시설에의 입소조치가 행해진다. 농아시설은 청각·언어기능 장애를 동시에 지닌 아동을 장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훈련을 행하는 곳이다.

취학에 있어서 장애아의 진로는 농·맹아학교, 양호학교(특수학교로 총칭된다), 교구(教區) 학교의 특수학급(장애아학급), 교구(教區) 학교의 보통학급에 세가지 길이 있다. 어느것을 선택하는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심신장애아 취학지도위원회가 아동의 상황을 판단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양호학교에는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 병약아를 위한 각각 별개의 양호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서 아동의 장애에 적합한 교육·

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1990년 현재 일본의 양호 학교 및 농·맹아학교 재학생의 수는 93,000명에 달하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 언어장애아, 정서장애아 등의 학급이 있다. 앞서의 양호학교가 아동의 생활현장인 교구로부터 떨어져서 별개의 부지에 건립됨에 비해서 교구의 학교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최근에는 정상아동의 보통학급과 같이 할 수 있는 교과나 행사는 합동으로 진행하는 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3) 비행청소년의 동향과 처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20세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범으로 간주되어 형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처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다.

범죄소년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을 경우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관에게 송치한다. 범죄소년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관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처우의견을 첨부하여 가정재판소에 송치한다.

가정재판소에서는 우선 소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년을 소년감별소로 보내어 자질감별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 또는 심판이 끝난 뒤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 송치(18세 미만의 소년에 한정됨), 심판불개시, 불처분, 보호관찰, 교호원·양호시설 송치, 소년원 송치, 검찰관 송치(16세 이상의 소년에 한함)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이중 보호관찰, 교호원(敎護院)·양호시설 송치 및 소년원 송치는 가정재판소가 행하는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결정이 내려진 소년은 보호관찰관 및 민간 독지가인 보호사(保護司)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교호원·양호시설 송치의 판결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인 교호원(불량행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의 교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양호시설(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등의 양호·보육을 위한 시설)에, 소년원 송치판결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각각 수용된다. 검찰관 송치는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처분으로서 역송(逆送)이라고도 지칭된다.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외에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소년, 기소된 뒤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보호관찰에 회부된 소년,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형무소 등의 행형시설에서 가출옥한 소년은 보호관찰에 부처져 보호관찰관과 보호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IV.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특징

1.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특징과 비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연령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을, 청소년복지를 대상 연령 면에서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구분이 불명확하고 청소년의 연령범주에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이 중복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미국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24세까지

이며, 특히 사춘기 후기에 속하는 15~24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0~20세까지를 말하며 법령에 따라 24세까지를 대상범위로 한다. 이상의 정의와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9~24세까지의 연령범주를 종합해 볼 때, 각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광범위하게는 0~24세까지, 협소하게는 15~20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미국의 청소년복지 정책은 1980년에 제정된 「공법 *Public Law*96-272」, 일명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수립되고 있다. 미국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특징은 첫째, 연방·주·지방정부(군·시)별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행동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봉사의 전달체제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단일한 상위행정체계가 없이 분산되어 있고, 행정부의 복지사업을 보조하는 강력한 민간영역을 가진다.

일본의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특징은,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 내지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정책의 입법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기타 관련법(근로청소년복지법, 청소년관련법)에 준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행정조직을 보면, 민간부문보다 정부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주도하에 지방일선기관의 시행이라는 계열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역할을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에서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소년 복지정책은 세 나라 모두 종합

적·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단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자원조달

청소년 복지정책에 필요한 자원조달 면에서 볼 때, 두 나라 모두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공적부조에 의한 지출이 청소년복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보조에 지방정부의 재산세와 교육세에서 일부를 충당하여 청소년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일본의 경우도 국가의 일반회계세출을 예산에서 사회복지관계비로 지출되는 국고지출금과 지방의 일반재원에서 지출되는 민생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모두 중앙정부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지방정부나 지방행정기관에 지출의 부담을 크게 지우는 반면, 세(稅)재원의 주근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2.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프로그램 비교

1) 직업복지 프로그램

직업관련 청소년 복지정책은 직업교육 및 훈련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의 직업복지는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본의 직업복지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와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 학대, 유기, 방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일본에 비하여 미국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동학대신고법(1960),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처우에 관한 법(1974)을 근거로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방지센터와 국립아동학대방지위원회를 주축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반면, 일본은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법과 전문센터 및 위원회가 없이 아동사무소와 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미혼모청소년 및 모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미국과 일본의 미혼모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일종의 모자가정형태로 인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국과 일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서비스는 의료보장, 임산부의 보호, 교육기회부여 등이다. 또한 의료보건서비스에 있어서 두 나라 모두 미혼모청소년 또는 임산부의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급여를 제공하는데, 일본의 서비스 내용은 보건소와 조산시설의 입소조치와 모자복지자금의 대부 등인 반면, 미국은 피임법, 임신중절서비스, 10대 임신예방서비스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4)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미국과 일본의 가출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특기할 점은 미국의 서비스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사업은 비교적 대규모의 ‘운동’ 또는 캠페인의 형태를 띠는 점이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예로 들면, 미국은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이동생활을 하는 가출청소년, 마약복용 가출청소년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프로그램이 제시되지만, 일본은 ‘전국가출소년발견보호강

조월간’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의 비행방지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하는 프로그램 개발(미국)과 캠페인 사업(일본)을 추진하는 것이다.

5) 빈곤 및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빈곤과 결손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소득유지, 식품영양, 교육훈련, 보건의료, 주택사업의 영역이 포함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반면, 일본은 주로 교육기회의 확대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6)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구체적인 법령에 입각하여 강조하고 있는 영역으로 특히, 교육훈련 및 교육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미국의 경우, 1975년에 제정된 ‘전체 장애아동 교육법’(PL94-142)에 의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주정부가 맡게 되었고, 가능하면 장애아동을 일반아동에 통합시키는 교육방법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학교교육법’에 의하여 맹아, 농아, 양호학교 형태 또는 일반학교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하는 형태의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7)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예방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은 청소년미혼모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 부모교육, 청소년 여가사업, 초·중·고등교육, 보건의료사업, 주택사업, 정신보건서비스 등과 종합청소년개발센터,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

년보호사업, 아동복지사업,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 인디안 청소년사업 등이 시기별·지역별로 필요시에 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일반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은 학습활동 장려, 단체·그룹활동, 문화활동, 체육·스포츠의 보급과 진흥, 체력증진 국민운동, 연구조사 및 정보자료수집과 제공, 청소년국민운동 등이 실시되고 있다.

8) 가정강화 프로그램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사회화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일차적인 보호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또는 가정의 조건을 정비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1/3을 청소년(9~24세)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복지의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에 의해 경제적 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낙후되어 사회복지부문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미국·일본과 동일한 체제에 속하면서 다른 유형의 복지정책인 자유방임주의적 형태를 취한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관련법은 일본의 것을 모방하고 있는 반면에 복지문제의 해결방법은 미국식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이므로 원리와 실천이 상호괴리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복지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투표권을 지닌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에 비해, 그 내용의 종류와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에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청소년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인간투자 및 인간개발의 생산적 비용이다.

청소년복지의 내용면에서, 사회변동과 함께 계속 변화하는 청소년의 욕구와 변화하는 문제의 양상과 상황에 의해 청소년 복지정책도 그 특성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가정 파괴와 취업모 증대와 더불어 자녀양육과 관련된 복지사업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으므로 학생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실시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과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여 탄력적이고 적응력있게 개입하여 청소년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복지의 수행과정에서 특기할 점은 청소년이 객체로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주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서 약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도 함께 볼 때 드러나는 개념이다. 즉, 해당 청소년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 서비스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래집단 청소년이 성인들의 협력자 내지는 동반자로서 상담 혹은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하고 능동적 역할을 할 때 주체가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모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적 모델과 보완적 모델의 절충된 형태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 접근 방법으로는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종합적

이고 장기적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분적 보완프로그램을 고수하여 미흡한 치료적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지급, 약물남용방지 등의 예방적 사업을 포함한 과감하고도 종합적 접근을 추구하여 문제청소년이 발생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문제발생 후에는 다방면으로 치료하여 청소년을 바로 키우는 청소년복지 사업의 전개가 절실히 요청된다.

제 언

1. 청소년기본법의 보완과 관련 행정기구의 체계화를 통해 청소년 복지센터의 설치가 요구된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관련 법은 모든 해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에 규정된 데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들의 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민간부문의 협조를 적극 구하여 청소년 복지수요를 민간단체가 직접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지역사회는 공식적 지지체계, 다양한 비공식 연결망을 통하여 청소년을 사회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현장이 된다. 따라서, 가족, 친구, 이웃, 상가, 학교가 청소년과 상호협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중심

사회통제 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5. 청소년들이 복지사업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복지를 위한 직접적 봉사활동으로는 상담, 케이스 워크, 사회교육, 레크리에이션 및 캠프활동, 지역사회조사 및 연구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 활동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조직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재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6. 복지프로그램의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청소년문제는 흔히 복합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청소년은 총체적 인간으로 성장·발달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사회사업은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교사 등의 타전문분야의 온갖 자원의 지원체계의 협력을 받아 다방적(多方的) 접근을 추구해야 종합적인 제도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7. 다양한 특징과 욕구를 지닌 청소년 집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시설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 대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성문제, 약물남용방지, 정신건강, 직업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적 제도구축과 함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청소년집단의 특수한 요구와 필요에 상응하는 시설 — 예를 들어 교정교화, 직업훈련실, 상담소, 중간복지시설 등 — 을 분야별로 구비하여 생활지도 및 치료를 전문화해야 한다.

8.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 첫째,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은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물질적·정서적 기반이 취약하므로, 가족에 대한 공적부조가 정책적으로 실시되어 소득을 유지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둘째로, 부모의 역할을 조력할 가정조성서비스의 실시가 필요

하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가사를 처리하여 자녀양육과 가족보호 및 부양의 역할을 보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년소녀 가장등에 시급히 실시되도록 해야 된다.

9. 청소년에 대한 일시적 보호를 제공할 가정위탁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부모가 심한 장애를 가졌거나 아동을 학대할 때 아동이 일시적으로 거할 가정위탁보호 서비스는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10.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서 부모교육과 부모훈련이 필요하다: 부모교육과 부모훈련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은 가족문제가 발단이 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청소년의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11. 상담소의 설치 확대 및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겨우 51개소의

아동상담소가 있을 뿐이므로 서비스의 대상이 가출, 불량아, 문제아동, 결손가정아동, 저소득가정 아동등으로 제한되어 학대·방임아동, 약물사용 아동, 피해아동, 정서장애아동은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청소년 개별 케이스의 문제 원인과 치료·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적 상담을 강화할, 상담소의 확대설치 및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12.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조사와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을 기초로 청소년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3.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국민운동의 전개가 요구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와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1990. 「90 예산개요」
- 권오득. 1991. “공동모금”,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만두. 1992. 「현대사회복지총론」, 홍익제.
- 김범수. 1991. “사회복지법인의 재원”,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선심. 1992.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박현경 (편), 「참고자료집」, 유니세프.
- 김성천. 1985. “미국의 사회봉사 전달체계”, 「사회정책연구」 제6집.
- 김영모. 1992.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태성·김경룡. 1993. 「복지국가론」, 나남.
- 김향초. 1991. “청소년복지 및 관련 서비스의 고찰”,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학대회자료.
- 김형열. 1990. 「정책학」, 법문사.
- 남세진. 1987.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참여”, 아산사회복지재단, 「한국의 사회복지 현재와 미래」, 창립 10주년기념 복지사회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재단.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편). 1991. 「사회복지사전」, 경진사.
- 박군성. 1993. “아동복지제도와 아동의 현실”, 제 2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 을 위한 전국대회 자료집.
- 박명운. 1990. “일본의 청소년정책”, 「외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서상목(외). 1988. 12.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성영혜(외). 1991. 「아동복지」, 동문사.
- 손준규. 1993. 「현대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송정부. 1989. “일본의 복지정책”, 신섭중외(공저), 「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 송정부. 1992b. “한·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편),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신섭중. 1992.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 “제 3분과 토론 : 청소년과 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양 훈. 1984.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정음사.
- 어운배. 199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원석조. 1987. 12. “지방자치제하의 지역복지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제9집.
- 원석조·강남기(역). 1981.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평화사.
- 윤영숙. 1989, 겨울호.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프로그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 윤정숙. 1985a. 3.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정책연구」 제6집.
- 윤정숙. 1985b. “프랑스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정책연구」 제6집.
- 윤현숙. 1991. “사회사업 실천과 사회복지제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미국과 서독의 사회복지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림대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유형」 제1집, 을유문화사.
- 이경희·이소희. 1993.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 이봉철. 1992. “민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청소년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윤구. 1990. “미국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미국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혜경. 1993. “복지국가의 형성과 전개 - 미국과 일본의 비교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제2집」, 을유문화사.
- 인정석·이상석. 1991. “사회복지분야의 민간 재원조달 및 활용방안연구: 공동모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협. 1992.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대출판부.
- 장인협·오정수. 199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 전남진. 1992. “미국의 사회보장”, 신섭중(외), 「각국의 사회보장: 역사, 현황, 전망」, 유풍출판사.
- 전남진. 1992. 「사회정책학강론: 복지정책의 수립과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태수. 1991. 「아동의 권리협약: 청소년의 권리」, 예지각.
- 조홍식. 1992. “가족과 청소년정책”, 「가족학논집」 제4집, 한국가족학회.
- 주정일·이소희. 1992. 「아동복지학」, 교문사.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편). 1992. 「한국 사회

- 보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체육청소년부. 1988.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체육부.
- 체육청소년부. 1992. 「청소년백서」, 체육청소년부.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편). 1992. 「미국의 청소년제도」, 체육청소년부 청소년 정책조정실(발행).
- 최항순. 1993.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 표갑수. 1992. “아동복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편),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 한국복지연구회. 1988.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복지연구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한국사회복지총람」.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외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남제. 1983. “청소년과 복지(Ⅰ)”,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함세남. 1992. “사회복지 정책이념에 관한 일고”, 강남대학교 출판부, 「논문집」 제22집, 강남대출판부.
- 함철호, 일본의 청소년정책, 「사회정책연구」 제10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8.
- Adler, P. A. and P. Adler(ed.). 1990.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 Development*, JAI Press.
- Allen, Marylee and Jane Knitzer. 1993. “Child Welfare : Examining The Policy Framework”,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5, No.2.
- Antler, Stephen. 1985. “The Social Policy Context of Child Welfare”, Joan Laird and Ann Hartman(eds.), *A Handbook of Child Welfare : Conflict, Knowledge, and Practice*, New York : The Free Press.
- Armstrong, Bruce. 1991. “Adolescent Pregnancy”, Alex Gitterman(ed.), *Handbook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Vulnerable Populations*,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 Axinn, J. and Levin, H. 1992. *Social Welfare : A History of the American Response to Need*, New York : Longman.
- Blumenkrantz, David G. 1992. *Fulfilling the Promise of Children's Services*,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Board of Editors at Encyclopaedia. 1981.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 1-9, Chicago :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Board of Editors at Encyclopaedia. 1990. *1990 Britannica Book of the Year*, Chicago :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Board of Editors at Encyclopaedia. 1992. *1992 Britannica Book of the Year*, Chicago :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Board of Editors at N.A.S.W. 1987.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2, Sliver Spring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Children's Defense fund. 1990. *S.O.S. America! A children's Defense Budget*, Washington D. C : Author.
- Conger, J.J. 1980. “Hostages to fortune : Adolescents and social Policy” Wallach, H.C.(ed), *Approaches to Child and Family Policy*, Colorado : Westview Press.

- Coston, L.B. 1979. *Child Welfare : Policies and Practice*, New York : McGraw-Hill.
- Costin, Lela B. and Rapp, Charles A. 1984. *Child Welfare : Policies and Practice*,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 Costin, L.B., Bell, C.J., and Downs, S.W. 1991. *Child Welfare : Policies and Practice*, New York : Longman.
- Csikszentmihalyi, M. and Larson, R. 1984. *Being Adolescent*, Basic Books Inc.
- Curtis, Lynn A. 1992. "Lord, How Dare We Celebrate? : Practical Policy Reform in Delinquency Prevention and Youth Investment", *Future Choices*, Spring Vol. 3, No. 3.
- Dixon, John and Scheurell, Robert P. 1989. *Social Welfare in Developed Market Countri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Edwards, Richard C. and Garonna, Paolo. 1991. "Patterns of Public Intervention in Training and the Labour Accords in Italy and the United States", Paul Ryan and Paolo Garonana and Richard C. Edwards (eds.), *The Problem of Youth : The Regulation of 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in Advanced Economies*, MacMillan.
- Garvin, Charles D., and Tropman, John E. 1992. *Social Work in Contemporary Society*, New Jersey : Prentice Hall.
- Germain, Carel B. 1985. "Understanding and Changing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in the Practice of Child Welfare", Joan Laird and Ann Hartman, *A Handbook of Child Welfare*, New York : Free Press.
- Gil, David G. 1985. "The Ideological Context of Child Welfare", Joan Laird and Ann Hartman, *A Handbook of Child Welfare*, New York : Free Press.
- Hills, Stephen M and Reubens, Beatrice G. 1983. "Youth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Beatrice G. Reubens(ed), *Youth at Work : An International Survey*, Rowman and Allanheld.
- Jeffs, Tony and Smith, Mark(eds.). 1988b. *Youth Work Welfare and the State*", MacMillan Education Ltd.
- Kadushin, Alfred and Martin, Judith A. 1988. *Child Welfare Services*, MacMillan Publishing Co.
- Kamerman, Sheila B. and Kahn, Alfred J. 1978. *Family Policy :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 Kamerman, S. B. and Kahn, A.J. 1990. "Social Service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and Youth Servies Review*, Vol. 12, New York : Pergamon Press.
- Karger, Howard J. and Stoesz, David. 1990.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 A Structural Approach*, New York : Longman.
- Kerry, John, "Youth Build Act of 1991", *Youth Policy*, 1993. Vol. 15. No. 2-3.
- Laird, Joan and Hartman, Ann. 1985. *A Handbook of Child Welfare*, New York : Free Press.
- Loppnow, Donald M. 1985. "Adolescents on Their Own", Laird, Joan and Hartman, Ann, *A Handbook of Child Welfare*, New

- York : Free Press.
- McGowan, Brenda G. and Meezan, William (eds.). 1980. *Child Welfare : Current Dilemmas. Future Directions*, F. E. Peacock Publishers, Inc.
- Meyer, Carol H. 1985.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Child Welfare", Joan, Laird and Ann Hartman, *A Handbook of Child Welfare*, New York : Free Press.
- Miringoff, M.L. 1992. "We need a Youth Policy for the '90s", *Social Policy*, Winter, Fordham University : Institute for Social Policy.
- N.A.S.W. 1987.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8th ed),
- Pecora, P. J., Whittaker, J.K., Maluccio, A. N., Barth, R. P., and Plotnick, R. D. 199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Rothman, Jack. 1993. "Runaway and Homeless Youth : Strengthening Services to Families and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5, No.1.
- Sarri, Rosemary C. 1985. "Juvenile Justice as Child Welfare", Joan Laird and Ann Hartman(eds.), *A Handbook of Child Welfare : Context, Knowledge, and Practice*, New York : The Free Press.
- Schwartz, Ira M.,(et. al.), "Keeping Kids out of Secure Detention", *Public Welfare*, 1991 (Spring),
- Shaw, Keith, et al. 1988. "Local Authorities and Youth Work : the Consequences of Declining Local Autonomy", Tony Jeffs and Mark Smith(eds.), *Welfare and Youth Work Practice*, MacMillan.
- Starr, J.M. 1986. "American Youth in the 1980s", *Youth and Society*, Vol.17, No.4, June.
- Stein, T.J. 1991. *Child Welfare and the Law*, New York and London : Longman.
- Stein, Theodore J. and Tina L. Rzepnicki. 1980. "Decision Making in Child Welfare :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McGowan, Brenda G. and Meezan, William, *Child Welfare : Current Dilemmas. Future Directions*, F. E. Peacock Publishers, Inc.
- Stromberg, C. Ronald. 1989. "Accountability and Treatment for the Serious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 William H. Barton et al., *Programs for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School of Social Work, Univ. of Michigan.
- Videka-Sherman, Lynn. 1991. "Child Abuse and Neglect", Alex Gitterman(ed.), *Handbook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Vulnerable Populations*,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 Wilensky, H and c. Lebeaux,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1958.
- Wilson, Miriam J. 1991. *Help for Children*, Shepherdstown, WV : Rocky River Publishers.
- Youth Policy Institute, *Youth Policy*, September 1992.

_____, Youth Policy, Vol.14, October/November 1992.

_____, Youth Policy, Vol.15, Spring 1993.

井垣章二. 1990. 兒童福祉, ミネルウア書房.

井垣章二・岡本榮一. 1990. 兒童福祉, ミネルウア書房.

福祉士養成講座, 編集委員會. 1990. 兒童福祉, 中央法規出版.

三浦文夫. 1990. 社會福祉通論, 第一法規.

佐藤進. 1989. 現代社會福祉法入門, 法律文化社.

小林弘人. 1988. 社會福祉のための法入門, 川島書店.

佐藤進. 1977. 兒島美都子, 社會福祉の法入門, 有斐閣.

仲村優一. 1983. 社會福祉の法と行規政, 有斐閣.

小田兼三・高田眞治. 1987. 現代社會福祉, 川島書店.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2. 青少年問題の現狀と對策(青少年白書),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1. 青代の青少年, (第

5回 青少年の連帶感などに關する調査告書),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2. 社會福祉の動向.

厚生統計協會. 1992. 國民の福祉の動向.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3. 社會福祉關係施策資料集11.

吉澤英字. 1989. 養護理論, 光生館.

大谷嘉朗. 1990. 施設養護の理論と實際, ミネルウア書房.

小田兼三・右井勲. 1989. 養護原理, ミネルウア書房.

全國社會福祉協議會養護施設協議會編. 1990. 養護施設ハンドブック.

平井信義他編. 1972. 「普通學級における心身に障害をもつ子」, 日本文化科學社.

市岡典三. 1973.5. “少年非行の背景をさぐる”, 「月刊福祉」.

東京都家庭裁判所 現代非行問題研究會編. 1972. 「繁榮の落し子たち」, 東京: 大成出版社.